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8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백영기(6574) / 보험정책팀장 박우민(6581) / 보험정책팀 대리 강지윤(6578) / 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02659호

시행일자 2025. 6. 9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항생제(주사) 구입·청구 불일치」 자율점검 운영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-164 (2025. 6. 4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「항생제(주사) 구입·청구 불일치」 자율점검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**(대상기간)** 2022. 1. ~ 2024. 12. (36개월)

○ **(자율점검 통보일자)** 2025. 6. 5. (목)

○ **(제출기한)**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,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

○ **(점검사항)**

- '항생제(주사제)'를 산정기준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 및 기록 후 요양·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
- 제출 자료의 위·변조 여부, 실제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

○ **(방법 및 절차)**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[별첨2]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

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

-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함
- 단,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·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음

- # 붙임자료 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.
2. 자율점검 운영 및 협조 요청 안내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* 수신처 : 각 시도 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
개원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